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70번)

2026. 6. 23.(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민수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
3. 회부연월일 : 2026. 6.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 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

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Ⅲ. 절차 이행 여부

1.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가. 입법예고(2026. 5. 30. ~ 6. 4.) : 의견 없음

나. 집행부 협의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 의견 반영(청년기회과- 6212, 2026. 5. 27.)

2. 비용추계

○ 추정 금액 : 530백만원¹⁾

- 안 제18조에 따른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수준으로 한정하여 비용을 추산함.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통합정보시스템(경기청년포털) 유지 관리비	530	106	106	106	106	106

Ⅳ. 검토의견

1. 주요 내용 검토

1) 출처 : 비용추계서(예산정책담당관-2031, 2026. 5. 12.)

가. 제안취지와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다각도로 추진 중인 청년지원사업의 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법적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면접수당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각 사업 정보가 부서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수요자인 청년들이 정책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원사업 신청 시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지역별 청년 인구·활동 현황 2024>

구분	청년 인구(명)	청년 고용률(%)
경기도	2,753,463	49.5
서울특별시	2,207,539	51.2
인천광역시	603,701	47.4
부산광역시	599,873	46.1
경상남도	513,575	36.5
대구광역시	443,902	37.5
경상북도	391,768	41.3
충청남도	367,353	44.2
대전광역시	312,451	43.4

구분	청년 인구(명)	청년 고용률(%)
광주광역시	292,718	38.1
전북특별자치도	290,402	38.0
충청북도	289,674	47.9
전라남도	273,787	41.2
강원특별자치도	254,589	48.1
울산광역시	199,160	40.2
제주특별자치도	117,694	42.1
세종특별자치시	68,568	36.2

<자료: 국가데이터포털>

- 이러한 관점에서 도 차원의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망으로 직접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청년의 행정 접근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서의 검증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조치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과도한 서류 부담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나. 개별 조문 검토

- 안 제3장 ‘청년정책 추진 기반’은 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도 차원의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행정망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의 규율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청년지원센

터'를 넘어 디지털 행정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것임. 따라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반을 포괄하도록 조례의 편제와 규율 내용을 일치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안 제18조(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도내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정보 연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함.
- 아울러 안 제2항 및 제4항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시스템 구축·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제2항이 정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체계를 광역시와 시·군 단위로 반영한 것임. 이를 통해 도와 시·군 간의 정보 단절을 예방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 안 제18조의2(청년지원사업의 접수·관리 등)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소득 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수요자인 청년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집행 부서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대규모 행정정보 연계에 따른 도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첫째, 수탁기관에 대한 민감정보 접근 권한 부여와 법적 책임 주체의 분리 문제임. 안 제18조의2 제2항 및 별표에 따르면 본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장애 여부,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고도의 개인 민감정보를 열람·처리하게 됨.

- 안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시스템의 운영을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행정청이 아닌 외부 위탁기관 소속 실무자에게 대규모 민감정보 접근권이 부여된다는 점임. 위탁 기관이 비록 공공기관이라 할 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따라 도와는 분리된 별개의 정보처리 위탁자에 해당함. 상위법령의 존재와 별개로, 조례를 통해 외부 위탁기관에 도민의 민감정보를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구조적 특성상, 대규모 정보 집중과 취급 사무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와 책임 소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통제 체계가 수반되어야 함.
- 둘째, [별표]의 포괄적 정보 조회 권한과 ‘최소 수집 원칙’의 실무적 충돌 우려임. 안 제18조의2 제2항 및 [별표]는 시스템을 통해 연계·조회할 수 있는 민감정보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사업용이 아닌 도내 전체 청년지원사업을 아우르는 ‘최대 허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임.
- 실제 도내 청년사업들은 그 목적에 따라 필수 요구 정보(소득, 장애 여부 등)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산 연계 및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이유로 개별 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별표]에 규정된 민감정보 일체를 상시 일괄 조회하는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존재함.

- 즉, 현행 조례안 제18조의2제3항에 명시된 ‘목적 외 이용 금지’라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별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포괄적 열람 관행을 기술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우며, 상위법령의 핵심 가치인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이 실무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 따라서, 조례안 의결 이후 실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개별사업별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 정보만 제한적으로 매칭되어 조회되도록 수탁기관 실무자의 직무별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산망 접속 기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보안 감사 등 실효성 있는 관리적 보호 조치가 위탁 협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종합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의 기조에 맞추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별 사업마다 청년들이 구비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단일 창구에서 필요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집행부서가 아닌 외부 수탁기관에 도민의 고도 민감정보를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시스템 구조는 보안 사각지대 발생 및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실무 현장에서 수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안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할 구체적인 통제 체계가 요구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편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바, 이 두 가지 가치가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에 철저한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제명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	<p>○(입법목적 및 법령 등 위배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며 이는 「청년기본법」,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 <p>○(재정부담 수반 조례) 안 제18조는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수행을 규정함. 이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p> <p>○(성별영향평가 지침 위배 여부) 본 조례안은 성별 구분이나 고정관념과 관련한 표현이 없고, 성별 차이 등 차별 조항이 없어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위반하지 않음.</p> <p style="color: red;">※수정에 관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함</p> <p style="color: blue;">※제안에 관한 사항은 푸른색으로 표시함</p>
검 토 기 간	2026년 5월 6일~
검토 담당자	행정6급 유승규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의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2026년 5월 18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의정지원과 귀중